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8,462,046	10,753,861
일반회계	339,720,972	10,191,629
특별회계	18,741,074	562,232
기타특별회계	18,741,074	562,232
재정비축진특별회계	568,060	17,04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86,734	59,6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97,325	23,92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14,545	42,436
주차장특별회계	11,766,687	353,0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00,000	66,000
기반시설특별회계	7,723	2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93,90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후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국·시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